

## 『2026년 재난안전기업 해외 규격 인증 취득 지원 컨설팅』 참여기업 모집 공고

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제20조(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)에 따라,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「재난안전기업 해외 규격 인증 취득 지원 컨설팅 사업」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5월 4일  
행정안전부 장관

### 1 사업 개요

- (목적) 우수 재난안전기술의 **상용화, 제품화, 판로 과정**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현장 중심의 **맞춤형 컨설팅 지원**을 통해 해소하여 **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** 추진
- (주최/주관) 행정안전부/(사)한국능률협회
- (주요 내용) 해외시장 진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을 통해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
- (지원 사항) 인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, 인증비, 시험 접수비 등 직접 소요 비용 지원\*(최대 80%, 5백만원 지원)
  - \* 11월말까지 해외규격 인증 취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해 지원 예정
  - IR 피칭 행사, 간담회 및 네트워킹 행사 등 추가 지원
  - ※ '국내 및 해외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'과 중복신청 불가

### 2 『해외규격인증 컨설팅』 지원 개요

- (컨설팅 내용)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규제 검토, 절차 및 필요서류 구비 방안, 정보 제공 등 지원
- (지원 사항) 해외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소요 비용의 최대 80% 지원(인증비, 시험비 등)
  - ※ 제품 1개, 인증 1개만 지원 가능,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및 소요비용 지원
- (지원 분야) 아래 분야 이외의 규격 인증은 지원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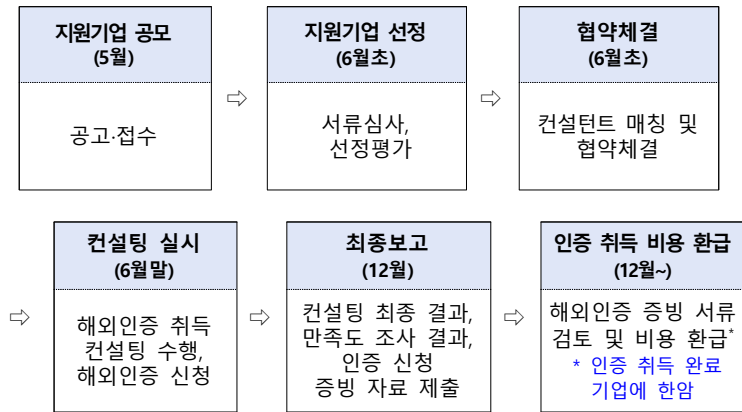
국가별	규격명	제품 분야
미국	FCC (미국통신위원회 전자파적합성인증)	Unintentional radiators, Intentional radiators
	FDA (미국식품의약국허가·등록제도)	의료기기 -의료기기 Class1-
유럽	CE (유럽통합규격인증)	전자기기, 의료기기, 체외 진단기기, 방폭기기, 건설자재, 개인보호장비, 기계류
일본	PSE (일본전기용품안전인증)	전기·전자기기·제품
국제	IECEE-CB test (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)	전기·전자기기·제품

인증건수	제품수	기업당 지원 비용한도	지원한도
1건	1개	5백만원	부가세를 제외한 소요 비용의 80%
(1) 제품 1개, 인증 건수 1개만 지원 가능 (2) 제품분야 해당 여부는 재난안전산업 관련성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예정 (3) 지원 내용 : 희망 인증 취득을 위한 절차 및 필요 서류 구비 방안, 정보 제공 등 지원 ※ 본 컨설팅 프로그램은 시험 신청, 필요서류 작성 및 제출 등 대행은 지원하지 않음. (4) 비용 지원항목 - 직접비 :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, 심사비*, 법정대리인 선임비** 등 * 심사비 :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 ** 법정대리인 선임비 : 인증이나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소요 비용 - 시험비 :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 (5) 비용지원 유의사항 - 과제 수행기간은 당해연도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2026년 11월 30일까지 인증을 획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- 공고일 이전부터 착수하여 2026년 11월 30일 이전까지 획득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인증 건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			

○ (지원 내용) 전문가 컨설팅 및 추가 프로그램 제공

컨설팅 분야	컨설팅 내용
1:1 맞춤형 컨설팅 및 취득 소요비용 지원	- 우수 재난안전기업의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- 인증 취득 완료 시, 인증비, 시험비 등 해외규격 인증 발급을 위한 소요 비용의 80% 지원(최대 5백만원) - 기업별 인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- 기업당 제품 1개, 인증 1건 취득 지원
IR 피칭 행사* * 선택사항	- 투자유치를 위한 IR 수준 진단 및 전문가 매칭 기회 제공 ※ 진단단계, 검증단계 총 2회
공통교육	- 재난안전기업의 국내 공공조달 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및 최신 현황 공통교육
기업 간담회	- 참여기업 간 정보 공유 등 네트워킹 장 마련 - 선도기업 강연 및 전문가 특강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지원 -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(지원사업) 안내
컨설팅 사례집 및 수수료증 발급	- 컨설팅 성과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여 성과 확산, 우수사례 홍보 - 컨설팅 프로그램 수수료증 발급

○ 사업 추진 일정



※ 세부 일정은 사업 여건 및 프로그램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 모집 개요

- (신청 기간) 2026. 5. 4.(월) ~ 5. 27.(수) 18:00까지  
※ 이메일 도달시각 기준으로 마감일 18:00까지 신청서 제출 완료 기업만 인정
- (신청 방법) 온라인(이메일 [safetykorea.apply@gmail.com](mailto:safetykorea.apply@gmail.com)) 제출  
- 신청서 및 제출서류(행정안전부 누리집(www.mois.go.kr) 및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(www.ksis.go.kr) 게시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
※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, 온라인 제출 시 메일 제목 준수 요망  
메일 제목 : (기업명) 2026년 재난안전기업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신청

○ (제출 서류) 아래 서류 필수 제출

연번	제출 서류
①	재난안전산업 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신청서(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4호 서식)
③	[붙임1] 신청 개요
④	[붙임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
⑤	[붙임3]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⑥	[붙임4]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
⑦	[붙임5] 해외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 이행확인서
⑧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) 또는 사업자등록증

○ (기타 서류) 해당 시에만 제출

연번	제출 서류
①	공장등록증
③	수출실적 증명서('23년 ~'25년)
④	해외특허 또는 해외상표 ※ 출원 또는 등록증, 전용실시권 포함
⑤	제품카달로그(외국어)
⑥	기타 보증증서 및 지정서 증빙자료 (재난안전제품인증서 등)
⑦	시험·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※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,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만 인정됨
⑧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) 또는 사업자등록증

- (작성 요령) 신청서 및 제출서류 붙임 1~5 양식에 맞춰 작성  
- 신청서, 붙임 서식 2, 3, 4, 5에 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제출
- (제한사항) 해외 규격 인증 취득 지원사업에 3회 이상 재참여 불가(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)

## 4 신청 자격

- 재난안전 분야 기술·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·중견기업으로 아래 사업화 대상에 해당하며 **해외진출 역량을 보유하고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**

- ▶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,
  -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술·제품 사업화 기업
  -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·제품 사업화 기업
  -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·제품 사업화 기업 등
- ▶ ‘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’에 해당하는 기업
  - [참고자료]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및 ‘공공데이터포털’ (<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069244/fileData.do>) 참고

- (신청제외 대상) 하단 조건에 1개 이상 해당 시 본 사업 신청 불가

### <신청 제외대상 안내(필독)>

- ▶ 정부로부터 본 사업과 유사한 컨설팅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
- ▶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, 대표자,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
- ▶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
  - 기업의 부도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
  - 법정관리/화외기업
- ※ 단,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외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
-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전년도 감사 의견이 “의견 거절” 또는 “부적절”인 경우
- 개인회생/파산/면책권자

### ※ 유의사항

- 추회/주관기관은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 요건 검토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불응 시 신청(선정)이 취소될 수 있음.
- 제출된 서류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동일 사업 지원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.
- 제출된 신청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, 접수된 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는 반환되지 않음.

-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, 향후 2년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
- 「공공재정환수법」개정 및 시행(2024.09.27.)으로 부정 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 (이자율 포함)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(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)이 부과·징수될 수 있음
- 과제 수행기간은 당해연도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2026년 11월 30일까지 인증 획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
- 기타 세부 자격 및 가이드는 [별첨 1] 참고

## 5 모집 규모 및 선정 절차

- (모집규모) **총 5개** 기업 ※ 중도 포기를 고려하여 예비기업 선발 예정
- (선정절차) ‘서류심사’를 거쳐 최종 선정
  - ※ 신청 기업은 서류심사 이후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, 전화 인터뷰 및 현장 심사 진행을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야 함

### 【 참여기업 모집 심사 일정 】

일정	구분	세부 내용
5월	공고 접수	■ 신청서 제출
↓		
5월말~6월초	서류심사	■ 신청서, 지원요건 검토 ■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진행
↓		
6월말	최종 선정	■ 선정 결과 및 평가 내용 안내 ■ 종합 진단 및 컨설팅 주제 확정
↓		
6월말	협약체결	■ 추진계획 보완 및 3자 협약

※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 가능

## 6 평가 기준

### ○ 서류평가 기준

- ▶ 국내 재난안전기업 적합 여부
- ▶ 해외규격 인증의 적정성, 인증 획득 가능성 및 기타 사전 명시된 자격 조건 적격 여부 심사
- ▶ 서류심사 양식 형식 요건 적격 여부 및 작성 충실도

### ○ 선정평가 기준

항목 및 배점		세부 평가 내용
보유 역량 (60점)	기술·품질 우수성 (20)	기존 유사·동종제품 대비 성능·품질의 우수성, 제품의 차별성 등
	인증획득 노력도 (20)	목표 시장 진출 노력도(인증 취득 사전 준비 여부)
	인증 획득 필요성 및 경쟁력 (20)	해외 수출 품목으로서의 적합 여부(품질, 기술 수준 등) 수출(예정) 대상 국가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 및 수출 경쟁력(인지도, 품질, 가격)
잠재 역량 (40점)	해외수출 준비도 (20)	재난안전제품 해외 수출 및 인증 획득 의지 가용자원 및 수출 업무 담당자 역량
	수출 역량 (20)	수출 실적 및 비중 수출 기반 보유 여부, 준비 활동 등
가산점 (최대 10점)	- 최근 5년간('21년~)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부스 참가 경험(2)* * '26년 부스 신청 후, 비용 납부 완료시 점수 부여	
	- 최근 3년간('23년~) 행정안전부 주관 수출상담회 참가 경험(2)	
	- 최근 5년간('21년~) 행정안전부 주관 R&D사업 참여 경험(2)	
	- 최근 2년간('24~'25년)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수 경험(2)	
	- 최근 3년간('23년~)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기업 통합한국관 참가 경험(2)	

## 7 문의처

담당자	연락처	전자메일
한국능률협회 이가영 선임 컨설턴트	02-3274-9383	safetykorea.apply@gmail.com
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서지우 주무관	044-205-4184	pinky0322@korea.kr

## 별첨 1 컨설팅 신청 및 과제 수행 가이드

### 1. 사업협약 체결

가.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(다만, 사업협약 체결기간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공지할 수 있다.)

- 1) 선정된 기업은 “사업 협약서” 및 “사후관리 정보 활용 동의서”를 작성하고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(양식은 최종 선정 이후 공유)
- 2) 관리기관은 제출된 사업 협약서를 검토하고,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상이 없으면 사업협약을 체결한다.
- 3) 과제 수행기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

나. 선정된 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 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### 2. 사업협약 해지 및 취소

가.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 협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- 1)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
- 2) 참여기업이 사업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
- 3) 과제 수행기간 내에 과제의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
- 4) 과제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완료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5)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본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
- 6)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

- 7)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기업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,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실제 과제 수행 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되어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
- 8)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

### 3. 과제수행

- 가. 참여기업은 사업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 수행기간 내에 과제를 완료하여야 한다.
- 나. 참여기업은 동 사업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통하여 인증획득 절차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,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### 4. 완료보고

- 가.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을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증 획득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협약 건에 대한 다음의 서류를 이메일로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) 완료보고서 1부 (대표자 직인 날인)
  - 2) 성과보고서 1부
  - 3) 인증서사본 1부 (DoC인증의 경우 참여기업의 적합 선언문 사본 1부)
  - 4) 인증심사보고서 1부 (인증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)
  - 5) 공장심사보고서 1부 (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)
  - 6) 시험성적서 1부 (각 시험규격별로 제출)
  - 7) 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비용, 시험비용, 심사비용 등에 대한 Invoice(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) 각 1부 (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)
  - 8) 각 해당 기관에 이체한 송금(이체)증빙자료 1부(인증비용, 시험비용 등 지급확인용)
  - 9)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 
(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, 개인일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)

- 10) 사업자등록증 1부
  - 11) 컨설팅 일지
  - 12)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 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명시된 이전 인증서1부 (인증갱신에 한함)
    - ※ 과제수행 마감일(2026년 11월 30일)까지 수취된 이메일까지만 인정
    - ※ 완료보고서 및 제출 필요서류 항목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나. 관리기관은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기간 내에 보완(회신)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제출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되면 완료 보고를 반려할 수 있다.

### 5. 사업 참여의 제한

- 가.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
- 나. 관리기관은 사업협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허위나 부정행위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한 사유
▶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(사업협약된 인증 전체)을 포기 또는 실패한 경우
▶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
▶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
▶ 특별한 사유 없이 행안부 및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
▶ 특별한 사유 없이 행안부 및 관리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부,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
▶ 정부출연금을 부정행위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
▶ 인증서, 관련문서의 위·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
▶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과의 담합 등 부정행위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인증획득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은 경우
▶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
▶ 정부출연금 환수에 불응하는 경우

## 6. 기타 유의 사항

- 가.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지원금 한도(협약금액)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
- 나. 「공공재정환수법」 개정 및 시행(2024.09.27.)으로 부정청구 등\*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(이자율 포함)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(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)이 부과·징수될 수 있으니,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,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바람
  - \*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,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등
- 다. 인증 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 실적 제공 및 성과 증명 요청에 응해야하며, 미제출 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  - \*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공지
- 라. 사업신청 및 선정 후 과제수행 가이드 및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
## 별첨 2 제품 시험기관 자격 기준

### □ 제품 시험기관(Lab) 자격기준

(DoC 또는 시험성적서만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인증에 한하여 적용함)

- ① KOLAS 등 APAC 및 ILAC에 Full-Member로 등록된 국가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, CBTL 시험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지정 시험 기관만 인정
- ② 지원규격별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이 지정 범위에 대해 시험을 할 경우, 위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기관도 인정
  - KOLAS 인정분야 확인 : KOLAS ([www.kolas.go.kr](http://www.kolas.go.kr))
  - Full-Member 확인 : APAC ([www.apac-accreditation.org/membership/](http://www.apac-accreditation.org/membership/)), ILAC ([www.ilac.org/signatory-search/](http://www.ilac.org/signatory-search/))
  -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 확인 : 국립전파연구원 ([www.rra.go.kr](http://www.rra.go.kr))